

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(2021. 12. 17.)
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
공포한다.

2021년 12월 29일

목포시의회의장 박 창 수



목포시의회 규칙 제7호

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

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 조례라 한다)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
무분장 등 조례시행”을 “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
례 시행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제6호와 제7호 중 “분회”를 “분회의”로 하고 제14호, 제15
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“제14호”를 “제16호”로 한다.

14. 의원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의 수집, 조사, 연구 및 제공에 관

한 사항

15. 주민조례발안 및 청구에 관한 사항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「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별표2 서식의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와 같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정책지원관)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,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4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5.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6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목포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<u>조례라 한다</u>) 제6조 규정에 의하여 <u>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제6조</u> <u>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 (사무국장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</u></p> <p>7. <u>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</u></p> <p>8. ~ 13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4. (생략)</p>	<p>제2조(사무국장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본회의</u> ----- -----</p> <p>7. <u>본회의</u> ----- -----</p> <p>8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<u>의원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의 수집, 조사, 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5. <u>주민조례발안 및 청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6. (현행 제2조제2항제14호와 같음)</p>
<p>제3조 (전문위원) ① <u>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</u></p>	<p>제3조(전문위원) ① <u>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</u></p>

<p><u>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문위원 직급은 「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별표2 서식의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와 같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조(정책지원관)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</u> <u>2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,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 <u>3.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 <u>4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</u> <u>5.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u> <u>6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</u>